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무상운송 의무화〉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31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무상운송 의무화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6. 23.

다.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 2).

Ⅲ. 검토의견

1.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무상운송 의무화(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무상운송의 지원기준·방법을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u>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임대료, 무상운송의 지원기준·방법 및-----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법 제8조의2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대 농업기계의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 운송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현행법상 지원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운송비 지원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은 148개 시·군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15개(77.7%)가 배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33개(22.3%)는 이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¹⁾, 배송료는 편도 기준으로 자체 배송의 경우 1만 5천원부터 7만 5천원까지, 위탁배송의 경우 5만원부터 15만원까지로 파악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송서비스를 시행하는 1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시·군은 조례에서 운반비용과 유류비 등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73개 시·군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무상배송 또는 배송료 일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10개 시·군은 배송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1)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인력 부족 등을 배송서비스 미운영 사유로 제시하였다고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운반비용 부담 규정 현황 】

구 분	원칙 사용자 부담 예외적 지원	사용자 부담 규정	조례 미반영
시·군 수	73개	32개	10개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따라서, 배송서비스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운송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의 운송수단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은 임대료 외에 운송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① 비용지원 의무화의 적정성, ② 무상운송 의무의 이행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 측면, ③ 지원대상 요건의 명확성 및 ④ 임대사업의 운영수지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무상운송 비용지원 의무화의 적정성 및 현행 지원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 제8조의2제4항 후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운송비 지원근거인 현행 제1항에 비하여 특정한 경우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는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두 규정의 병존만으로 곧바로 해석상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행 제1항에 따른 운송비 지원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그 원인과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한 경우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8조의2제4항은 전단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운송 의무를 부과하고, 후단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비용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무상운송 의무가 그대로 유지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지 아니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48개 시·군에서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무상운송 의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되며, 국비 지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큼.

다만, 향후 민간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채 무상운송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심사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기준, 무상운송 의무와 비용지원의 관계 및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 적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둘째, 무상운송 의무의 이행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8조의2제4항 전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무상운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배송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확보하거나 위탁운송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시·군 중 33개 시·군은 현재 배송서비스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역별 인력·차량 보유 현황, 재정여건 및 운송 수요 등에 따라 배송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역별 인력·차량 보유 현황과 재정여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법률에서 무상운송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비용의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운송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농 여건, 임대사업소의 인력·차량 보유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운영기준을 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무이므로, 법률에서 무상운송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운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운송 의무화에 따라 배송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한정된 인력과 차량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농업기계의 임대 회전율이 낮아지고, 그 결과 적기 영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제시 】

- (행안부) 지자체 예산 지원 위무화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
- (하동군) 무상운송 기반 부족, 위탁운송 시 재정부담(1회 약 20만원), 수요 급증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전문인력 업무 가중 우려
- (김포시) 농번기 배송인력 부족, 대형 농기계 운송비 부담, 주말농장 운영자의 수요 증가 및 화물차량 소유 여부 확인 곤란
- (진천군) 농기계 파손 및 반납 지연, 현장인력 업무 가중과 불필요한 가수요 발생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 필요
- (제주시) 운영부담 증가 및 제도 악용 우려, 지역 여건에 따른 유상·무상 운송의 탄력적 운영 필요
- (증평군) 운송인력 부족에 따른 임대회전율 저하, 지원대상 기준 불명확 및 현행 제도로도 지원 가능
- (충주시)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자부담을 부과하여 선별 지원하는 현행 운영체계 유지 필요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셋째,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안 제8조의2제4항은 무상운송의 대상을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확인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등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농업기계를 실제로 운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음.

예컨대, 소형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농업인이라도 대형 트랙터는 별도의 운반차량이 있어야 운송할 수 있으므로, 차량 보유 여부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운송차량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 배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운송차량 보유 여부 확인²⁾이 어려워 운송차량 미보유 농업인에 대한 차등 배송 지원·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함.

따라서, 개정안의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이라는 요건은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도

2)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농업인별 운송차량 보유 여부를 조사·관리하기 어려워 농업인의 의사표시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운송차량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배송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제출

어려워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운송 의무 발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무상운송 의무화가 임대사업의 운영수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수지는 이미 전반적으로 적자구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24년 시·도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평균 운영수지를 살펴보면, 임대료 등 수입만으로 인건비·부품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가 조사대상 시·도 전부에서 나타나고 있음.

【 '24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균 운영수지 】

(단위: 천원)

시·도	수입 합계	운송비 등 수입	지출 합계	손익
부산	83,769	7,620	255,994	△172,225
대구	102,329	-	529,937	△427,608
인천	161,640	-	328,554	△166,914
광주	208,295	-	250,449	△42,154
울산	199,442	-	433,354	△233,912
세종	220,986	-	345,300	△124,314
경기	163,133	6,006	426,212	△263,079
강원	251,389	3,527	946,878	△695,489
충북	352,492	25,345	745,925	△393,433
충남	194,892	3,177	515,030	△320,138
경북	398,715	8,177	822,701	△423,986
경남	290,057	6,971	440,948	△150,891
전북	299,693	3,437	679,179	△379,486
전남	274,436	4,203	564,204	△289,768
제주	110,501	-	274,184	△163,68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특히, 조사대상 15개 시·도 중 9개 시·도는 운송비 등을 수입 항목에 계상하고 있어, 무상운송이 의무화될 경우 기존 운송비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또한, 배송 수요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지원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사업소의 운영적자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예산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309억 4,000만원, 2025년 293억 4,900만원, 2026년 24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2% 감소하였음.

【 시·도별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반영 현황 】

(단위: 백만원)

시·도	2024년	2025년	2026년	시·도	2024년	2025년	2026년
부산	110	200	200	충북	2,240	1,852	300
대구	30	100	100	충남	2,580	1,998	1,650
인천	460	-	100	전북	2,860	3,346	3,900
광주	130	100	100	전남	7,430	6,760	5,100
울산	120	-	200	경북	6,650	8,497	6,250
세종	20	100	100	경남	3,650	3,680	2,300
경기	1,420	1,156	400	제주	1,110	1,200	850
강원	2,130	360	2,750	계	30,940	29,349	24,3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방안에 대하여도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국비지원의 타당성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원분담 기준은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임.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미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예산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상운송을 의무화할 경우, 운영수지 악화와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개정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송수단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접근성을 높여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로 배송서비스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시·군이 전체의 22.3%에 이르는 등 지역 간 서비스 격차도 존재하고 있음.

다만, ① 현행 재량적 지원규정 외에 무상운송 비용지원 의무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의 적정성과 무상운송 의무·비용지원 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고 인력·차량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판단기준과 확인방법이 불명확한 점, ④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운영수지 악화와 지방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개정안 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26
